

[ ] 전기식

[ ] 애플리케이션식

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

지정폐지신고서

|      |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|
|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|
| 접수번호 | 접수일자     | 발급일자 | 처리기간 | 15일 |
| 신고인  | 상호(명칭)   |      |      |     |
|      | 성명(대표자)  |      | 생년월일 |     |
|      | 주소       |      | 전화번호 |     |
| 신고내용 | 검정기관 소재지 |      |      |     |
|      | 폐지사유     |      |      |     |

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9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지하고자 신고합니다.

년 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 일

신고인
 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귀하

유의사항

○ 검정기관이 지정을 폐지하려면 폐지에정일 3월 이전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